법령해석 회신문(240027)

					_	
담당자	담당부서	금융정책과	담당자 (직위, 성명)	나혜영 서기관	연락처	02-2100-2591
질의요지	□ 「금융지주회사법」제48조의2 제1항에 의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기후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					
회답	 □ 기후리스크 관리 목적의 고객 정보 제공은 「금융지주회사법」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내부경영관리 목적의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. ○ 다만, 이 경우 「금융지주회사법」제4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,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과 절차(고객정보 분리보관, 이용기간 등)를 준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 					
이유	 □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'지주회사등")은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지주회사등에게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고객으제공할 수 있습니다. ○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"내부 경영관리'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, ②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, (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, ④성과관리, ⑤위탁업무 수행에 해당하는합니다. □ 기후리스크 관리는 "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" 업무기후리스크 관리 목적의 고객 정보 제공은 「금융지주회사법」 제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내부경영관리 목적의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. ○ 다만, 이 경우 「금융지주회사법」 제4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과 절차(고객정이용기간 등)를 준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 					다른 금융거래정보 보를 그가 속하는 고객의 동의 없이 관리"란 고객에게 무로서 ①신용위험 사, ③고객분석과 하는 업무를 의미 업무에 해당되어 법」제48조의2 및 구적의 정보제공에